

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안내문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?

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,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는 제도입니다.

■ 부과대상

| 부과대상 | 납부의무자 | 부과·징수기관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사업장폐기물*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(위탁 및 스스로 처리 모두 대상) |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| 한국환경공단 |

* 사업장폐기물: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 사업장비(非)배출시설계폐기물, 건설폐기물, 지정폐기물

●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

<비신고 대상>

-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(예 : 재활용, 파쇄 등) 만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.
-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. (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의2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3제2항1호)

[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]

- ① 폐석면
- ②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s)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
가. 액체상태의 것(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나. 액체상태 외의 것(용출액 1리터당 0.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)
- ③ 의료폐기물(태반은 제외한다)
- 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⑤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·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
- ⑥ 연구·검사용 폐시약
- ⑦ 폐농약(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⑧ 폐의약품(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)
- ⑨ 의료폐기물을 멸균·분쇄한 잔재물
- ⑩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
- ⑪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
-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(환경부 고시 제 2017-228호)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

● 대상업체: 사업장(지정)폐기물(건설폐기물 포함) 배출자(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시행령 제35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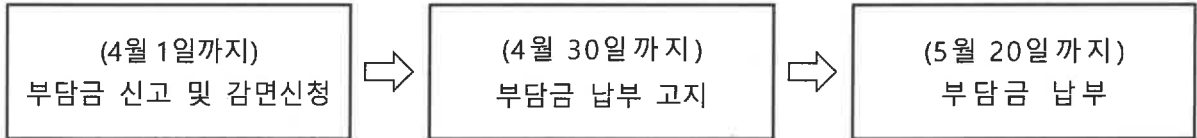
- 정기신고 일자 : 2024. 4. 1. 까지 신고

- 신고서류 (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고)

| 구분 | 서류명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본서류 | -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(서면신고 하는 경우) |
| 증빙자료 | - 폐기물의 유형 및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·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-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(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) -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(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) |
| 추가서류 (해당자만 제출) | -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(서면신고 하는 경우) 및 감면 증빙 서류 |

※ 감면신청서에 대한 증빙자료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참조

- 신고·납부 절차



■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

$$\text{폐기물 처분량(kg)} \times \text{부과요율(원/kg)} \times \text{산정지수}$$

※ 폐기물 처분량 : 전년도의 종류별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·매립한 양

●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

| 폐기물 유형 | | 요율 | |
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매립하는 경우 | 소각하는 경우 |
| 사업장폐기물 | 불연성 | kg당 10원 | - |
| | 가연성 | kg당 25원 | kg당 10원 |
| 건설폐기물 | | kg당 30원 | kg당 10원 |

※ 사업장폐기물 가·불연성의 분류는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시행령 별표5 참조

● 2023년도분 산정지수 : 1.13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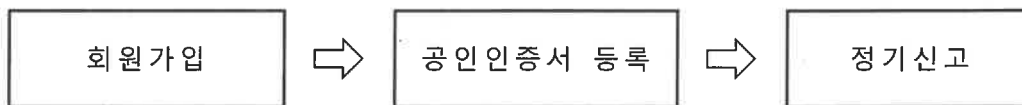
● 폐기물처분부담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, 연 4회 분할납부 신청 가능

■ 감면기준


| 감면 대상 | 감면 내용 | 감면율(%) |
|---|---|--------|
| ① 자가 매립 후 재활용 | ·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| 100 |
| | ·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| 50 |
| ② 소각열에너지 회수 (*2023년까지 처분한 폐기물에 적용) | · 소각열에너지를 75% 이상 회수하여 이용 | 75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60% 이상 75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60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50% 이상 60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50 |
| ②-1 소각열에너지 회수 (*2024년 처분한 폐기물 부터 적용) | · 소각열에너지를 75% 이상 회수하여 이용 | 75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70% 이상 75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70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65% 이상 70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65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60% 이상 65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60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50% 이상 60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50 |
| | · 소각열에너지를 30% 이상 50% 미만 회수하여 이용 | 30 |
|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| · 제품·재료·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·재료·용기를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| ④ 중소기업 (*2023년까지 처분한 폐기물에 적용) | 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| 10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| 50 |
| ④-1 중소기업 (*2024년 처분한 폐기물 부터 적용) | 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| 10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| 9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| 8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| 7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인 경우 | 60 |
| | ·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경우 | 50 |
| ⑤ 지정폐기물 처분 | · 지정폐기물을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| ⑥ 도서(島嶼)지역 폐기물 처분 | ·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| ⑦ 재난폐기물 처분 | ·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| ⑧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| ·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종료(예정)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| ⑨ 불법폐기물 대집행에 따른 감면 | · 지자체장이 대집행을 통해 불법투기·방치 폐기물을 소각·매립하는 경우 | 100 |

- 중소기업 중 다음의 사업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이상인 경우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·매립량이 5%미만인 경우에만 '④중소기업' 감면 대상이 됩니다.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
 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
 -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 처리업을 등록한 자
-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

■ 시스템 신고 절차 : www.budamgum.or.kr (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 참조)



- 회원가입 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된 사업장은 해당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바로 정기신고 가능합니다.
- 담당자가 변경되신 경우 새로 회원가입 하신 후 "기존사업장 담당자변경"을 통해 담당자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(www.budamgum.or.kr) - 「고객마당」 - 「교육자료」 메뉴의 49번 글 <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매뉴얼>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| | |
|---|---|
|  | <p>■ 정기신고 매뉴얼 다운로드</p> <p>좌측 QR코드 인식</p> <p>⇒ 교육자료 49번(2024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매뉴얼) 선택</p> <p>⇒ 하단의 첨부파일(PDF) 다운로드</p> |
|---|---|

■ 문의전화 :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-590-5093

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051-366-3742, 3744, 3746